

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시행 전년도 11월 30일”을 “시행연도 2월 10일”로, “시행 전년도 12월 31일”을 “시행연도 2월 2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행 전년도 12월 31일”을 “시행연도 2월 2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관 리시행계획(이하 “ <u>시행계획</u> ”이 라 한다)을 수립하여 <u>시행 전년 도 11월 30일까지</u> 특별시장 · 광 역시장 · 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는 관할 시 · 군 · 구(자치구를 말한 다. 이하 같다)의 시행계획과 해 당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의 시행 계획을 종합하여 <u>시행 전년도 1 2월 31일까지</u>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연도 2 월 1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연도 2월 2 0일</u> ----- -----.
②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 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<u>시 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</u>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	② ----- <u>시 행연도 2월 20일</u> ----- -----.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